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58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정진욱 · 박균택 · 이재관
정준호 · 문금주 · 이개호
양부남 · 조인철 · 안도걸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그런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

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중전의 4)) 중 “3)”을 “4)”로 한다.

- 4)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략)

<신설>

2. -----

가. -----

-

1) ~ 3) (현행과 같음)

4)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

우: 100분의 15

4) 1)부터 3)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 하는 경우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5) -----4)-----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